

정관(定款)변경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02월 17일
제출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1. 제안이유

가.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 정관 상 자본금 또는 출연금 등 기본재산 목록 기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 기재
-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참고

나. 일반직 정원 조정 (사장방침-219호, 2020.02.10.)

-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확대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정원 조정
- 비정규직 채용 지양, 채용투명성 강화 등 사업계약직 채용의 장애요인으로 신속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규직 증원 필요성 증대
- 필요인력 : 3명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 ▶ 정관 상 정원표 사무처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관 상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별표 3>

나. 일반직 정원 조정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부 칙 (2020. 1. 21)	부 칙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p><별표 2> (신설 2019.4.16., 개정 2020.1.21.)</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사 장</th> <th>사무처</th> <th>예술단</th> </tr> </thead> <tbody> <tr> <td>정 원</td> <td>699</td> <td>1</td> <td>154</td> <td>544</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699	1	154	544	<p><별표 2> (개정 2020.1.21., 2020.00.00.)</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사 장</th> <th>사무처</th> <th>예술단</th> </tr> </thead> <tbody> <tr> <td>정 원</td> <td>702</td> <td>1</td> <td>157</td> <td>544</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702	1	157	544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699	1	154	544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702	1	157	544																	
	<p><별표 3> (신설 2020.00.00.)</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 목록</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출연자</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서울특별시</td> <td>1,000,000</td> <td>설립출연</td> </tr> </tbody> </table>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3.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1)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 2)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863호, 2019.10.29.)
- 3) 일반직 정원 조정(안) (사장방침-219호, 2020.02.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예정

붙임 1.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도시미래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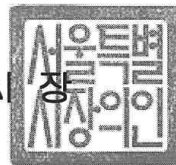
2.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니, 모든 기관에서는 '20.3.31.(화) 까지 기관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및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시 주관부서에서는 산하 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연기관 표준정관 1부.

2.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회신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11/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997 (2019.11.06.) 접수 정책기획팀-2164 (2019.11.06.)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 / <http://finance.seoul.go.kr/publiccenterpress>

전화 02-2133-6783 /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붙임 2.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863호, 2019.10.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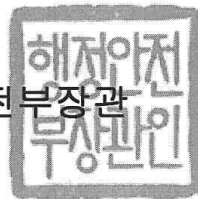
제목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11281호(2019.9.23.)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질의 1)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이 기본재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질의 2) 기본재산의 기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질의 1) 일반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비영리재단법인 참조)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출연금은 출연기관 기본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지방출자출연법 상 기본재산의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에서 출연기관에 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록을 정관의 별지로 기재하여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시 서울시 협의(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45조제3항)를 받도록 하여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사무관 백진걸 공기업정책과장 이현정 전결 10/29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2863 (2019. 10. 29.) 접수 공기업담당관-12686 (2019. 10. 31.)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63 /전송 044-204-8976 / jingul100@mail.go.kr / 비공개(5)